

## 2016년 제3차 사규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의장소 : 소회의실
- 심의일시 : 2016.4.19.(화) 16:00~17:00
- 심의대상 : 준법심사규정
- 심의위원 :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문완식(경영지원처장), 고상호(회계부장), 주홍석(공공임대부장), 정윤환(공유재산관리부장), 나재하(택지설계부장), 강기연(법무전문가)

**간사 김채원** : 2016년 제3차 사규심의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우진** : 간사의 성원보고에 따라 2016년도 제3차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총 1건으로 규정 1건입니다. (의사봉 3타)

심의번호 1호 준법심사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입안부서인 법무지원실에서는 제안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안부서(법무지원실)** : 【준법심사규정 제정안 제안요지 설명】

**위원장 김우진** :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환 위원** : 준법심사대상 업무가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과 변경계약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입안부서(법무지원실)** : 일상감사규정을 보면 이사회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표현한 이유가 실제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의도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제외사유로 법률적 검토사항이 아닌 경우나, 업무의 특성상 준법심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항은 제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부가 대상이 된다고보다 그 중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재하 위원** : 계약서라는 게 일반적인 계약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공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주민과 맺는 사업시행약정서라고 있고요. 또한 사업시행규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경우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디까지 심사대상 업무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안부서(법무지원실)** :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양당사자나 다수당사자간에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서명이 들어가고요. 그런 것은 협정서, 약정서 등 용어에 상관없이 계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규정과 같이 상대방과 협의 없이 우리가 일률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은 현재는 해당되지 않으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넣을 생각이 있습니다.

**정윤환 위원** : 신청하는 시기가 일주일 전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2개다 해당되는 업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입안부서(법무지원실)** : 저희가 의도한 것은 전자결재 올리기 전에 기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기안을 올리기 전에 저희 부서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윤환 위원** :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최종결재하기 이전에 하지 않습니까. 물론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기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잖아요. 준법심사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일상감사 쪽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니까?

**강기연 위원** : 시기 관련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짧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일상감사와 동시에 하는 방안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과 지난번 발표에서 감사가 하는 견제기능과 집행부 내에서의 준법심사기능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동일하게 판단해서 일상감사 이전으로 결정했구요. 대상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쪽에서는 준법심사거든요. 아시다시피 일상감사는 준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판단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준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일상감사 단계에서 적어도 준법성은 생략 내지 약하게 보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고요. 어쨌든 제도가 생기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조금의 초과시간이 생기는 부분은 컴플라이언스의 순기능에 의해서 커버되어야 될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안부서(법무지원실)** : 감사부서와 의견이 다르거나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을 감사부서에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업부서 입장에서는 크로스체크가 여러 단계로 거처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 준법심사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것이냐. 우리의 취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결재를 올리겠다는 거죠.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직원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회사에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내가 미비했던 사항을 준법심사를 통해 보완해서 결재를 올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법심사에서 봤기 때문에 감사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심사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문완식 위원** : 7조 심사 요청시기가 심사대상 업무의 방침수립 이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져 내부적으로 검토된 안이 가야 될 텐데 담당자가 방침 만들어서 그때 하라는 이야기인지?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최종결재권자 바로 직전에 하도록 되어있어서 최종결재권자 전까지 전부 검토가 된 사항인데요. 준법심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강기연 위원** : 제2항에 보시면 그 주어를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실제로는 컴플라이언스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법률자문을 하는 단계가 부장급 정도에서 기안문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기안자가 만들고 부장과 의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률문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지금 질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방침수립 전이되 그 주체를 주관부서장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 사업계획 기안보다 전에 하는 거죠.

**문완식 위원** :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실래요?

**입안부서(법무지원실)** : 5월 1일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이 아닌 샤인 업무시스템으로 시행하는데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법무지원실로 요청합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는 방침과는 별도로 주관부서와 심사부서 간에 샤인 업무시스템 상에서 서로 문서를 주고받는 형태로 될 겁니다. 첨부문서로 계약서와 방침초안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완식 위원** : 방침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위임전결규정에 최종결재권자 전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장결재라고 가정을 한다면 부장 선에서 준법심사를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처장까지 검토를 해서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김우진** : 7조 1항과 2항을 보면 1항은 방침수립 이전에 준법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기안을 하기 전에 요청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두 번째 2항을 보면 부서의 장은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준법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부서의 장이 결재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법심사를 하려고 하는 게 일단 기안 후 부장이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아니면 기안도 하기 전에 미리 법률검토를 받아보고 기안하는 것인지.

**강기연 위원** : 보통은 기안하기 전이지요.

**문완식 위원** : 샤인을 이야기하시니까 회계결의서를 예로 들어보면 자금지출을 할 경우, 담당자가 기안을 해서 예산, 회계부서의 통제를 받은 후 결재가 진행되거든요. 일단 문서행위를 하면서 타부서의 통제를 받는 것이잖아요. 기안하기 전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전달이 잘 되지 않네요. 일단 샤인에 등록해서 법무지원실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 하면 이미 기안을 한 것 아닙니까?

**강기연 위원** : 저희가 기안 전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사장결재를 받을 경우, 담당자부터 사장까지의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안하기 전에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한 내용을 첨부해서 샤인상의 부장결재로 별지서식상의 준법심사요청서를 보내면 법무지원실에서 법률사항을 검토해서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회신하는 방식입니다. 그 후에 정식기안인 사장결재를 올리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안 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고상호 위원** : 별지 1호를 보면 준법 심사 요청서가 있는데요. 법률적 쟁점사항(상세 기술)이라 되어있는데 여기에 기술한 사항만 심사를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 계약서가 있는데 표준약관에 벗어난 경우도 있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심사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기술한 것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심사를 해주는 겁니까?

**강기연 위원** : 법률검토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부분을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로 담당자들이 대부분 법적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어주면 시간절약을 할 수 있고 중요한 쟁점에 집중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넣었습니다.

**고상호 위원** : 제가 업무를 해봤더니 모르고 누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 이것은 운영의 묘인 것 같아요. 여기에만 딱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강기연 위원** : 네, 그렇습니다.

**문완식 위원** : 7조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된다면 굳이 1항, 2항 할 필요 없이 그냥 1항으로 방침수립 이전에 준법심사를 요청하되, 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준법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나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한데요. 나눠두니 상반적인 것 같거든요.

**강기연 위원** :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 그러면 되겠네요.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대상 업무의 방침수립 이전에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준법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면 되겠네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기연 위원** : 네. 좋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 아까 고상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실무진들이 쟁점이라고 아는 사항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모르고 놓치는 부분, 더 극단적인 경우는 고의적으로 범위반을 하는 경우도 1,000건 중에 1건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범위반을 모르는 경우도 쟁점사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쟁점사항을 적어두는 것은 좋지만 범위는 포괄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가시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강기연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주홍석 위원** : 준법심사기능이 처음 제정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계약서라든지 변경하려면 법무팀에 물어보고, 고문변호사 쫓아가고, 일상감사 받고, 방침 받고, 사규심의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거기다 준법심사까지 하게 된 거란 말이지요. 업무의 절차가 많아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상감사와 준법심사가 부딪힐 경우 종종 그런 게 생기거든요. 고문변호사 의견을 듣다 보면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걱정입니다.

**위원장 김우진** : 해보고 나서 이 규정을 다시 수정하고, 정정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준법심사를 제정했느냐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문완식 위원** : 제가 보서는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확대해서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제도화 시키는 것은 좋은방향인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상감사는 강제규정이거든요. 주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걸림돌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 실무진에게는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 있지만 하나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때 준법심사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 입장에서는 하나의 보호막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더 거치니까 귀찮아 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경영자적 차원에서 만드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극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완식 위원** :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심사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중요한 게 이사회에 부의되는데 이 이사회에 부의되는 안건 중에 준법심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부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포괄적인 것 같아요.

**입안부서(법무지원실)** : 심사대상 업무 관련해서 한 2~3개월 이상 몇 번의 회의를 하고 수정을 수차례 거쳤는데요. 이게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고 전사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양이든 범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규정을 보시면 많이 미흡한 부분도 많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석 위원** : 당장 작년 11월 12월에 이사회가 다섯 차례 개최 되었는데 그때마다 심사를 받는다는 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윤환 위원** : 5조에 대해서 하나 여쭙볼게요. 심사대상 업무를 보면 1호가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이고 2호가 신규계약서 아닙니까.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준법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입안부서(법무지원실)** : 그부분은 자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우진** :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강기연 위원** : 5조 2항이 준법심사 제외대상으로 예외조항인데요. 수정입안 전 비교표를 보시면 4호에서 예외를 적으면서 가, 나, 다로 예외를 적었던 게 그대로 가, 나, 다, 라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 나, 다, 라가 아니고 1, 2, 3, 4로 하는 게 체계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가, 나, 다, 라를 1, 2, 3, 4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진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홍석 위원 : 이것을 함으로 인해 회의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사회 부의사항 전체에 대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기연 위원 : 참고로 저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해서 숫자를 뽑아봤습니다. 한 달에 한번 보다 조금 더 자주 이사회가 열리고요. 연간 50여건인데 그 중에 컴플라이언스 대상이 될 건이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수는 20개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완식 위원 :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금 축소를 시키면 안 되나요?

강기연 위원 : 2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1항에 있던 사항들 중에서 2항에 해당하는 것은 다 제외하는 의미입니다.

주홍석 위원 : 이사회에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으니까 이 부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강기연 위원 : 그러면 2항에 제1항의 사항 가운데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로 적었는데 1항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제1항의 사항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하면

위원장 김우진 : 그러면 되겠네요.

문완식 위원 : 그렇게 하면 되네요.

위원장 김우진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 제3차 사규심의위원회 제1호 준법심사규정 제정안은 논의했던 대로 문구를 수정한 안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사규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